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821
----------	-------

발의연월일 : 2026. 3. 27.

발 의 자 : 김용태 · 김승수 · 서천호
서명옥 · 송석준 · 정성국
배준영 · 서지영 · 조은희
정동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전문인력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 생산활동의 중요한 주체로서 영농 · 영어 작업과 함께 가사 및 육아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신체적 부담이 크고, 출산으로 인한 영농 공백의 우려가 높아 농어업 발전을 위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어업인이 지역 특수성 등으로 영농 · 영어 작업과 가사를 대행할 도우미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대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농어업인의 영농 · 영어 작업에 적합한 농어업기계 및 편의장비 보급 확대를 법률에 명시하여 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 및 제11조의2).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여성농어업인의 영농·영어 작업에 적합한 농어업기계 및 편의장비 지원

제11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이 지역적 특수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도우미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도우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의 비용을 해당 여성농어업인에게 현금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의2에 따른 농식품이용권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 대상·범위 및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어업 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u><신 설></u> 6. (생 략)	제9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 ----- ----- ----- -----. 1. ~ 5. (현행과 같음) <u>5의2. 여성농어업인의 영농·영</u> <u>어 작업에 적합한 농어업기계</u> <u>및 편의장비 지원</u> 6.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여성농어업인 도우미 지원사업의 시행) ①·② (생 략) <u><신 설></u>	제11조의2(여성농어업인 도우미 지원사업의 시행)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이 지역적 특수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도우미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도우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의 비용을 해당 여성농어업인에게 현금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u>

<u><신 설></u>	<u>법」 제3조제8호의2에 따른 농</u> <u>식품이용권으로 직접 지급할</u> <u>수 있다.</u> <u>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u> <u>대상·범위 및 지급절차, 그 밖</u> <u>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u> <u>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u> <u>정한다.</u>
---------------------------	--